

신탁계약 주요 변경사항

효력발생일: 2018년 04월 27일

▶ 투자신탁명:

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 증권 모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

피델리티 이머징 마켓 재형 증권 자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

피델리티 차이나 컨슈머 재형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

▶ 투자신탁명:

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 증권 모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

▶ 주요변경내용:

- 환매대금 지급 주기 예외 규정 삭제
- 기재 수정 등

▶ 변경대비표:

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 증권 모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제21조 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	환매대금 지급 주기 예외 규정 삭제	<p>②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(당일 포함)부터 제 8 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<u>다만, 해외 금융기관의 연휴 등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10 영업일까지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</u></p> <p>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,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자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정한 환매청구 접수시간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에는, 동 환매청구에 기하여 당일에 자투자신탁이 이 투자신탁에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 환매청구일(당일 포함)로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9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<u>다만, 해외 금융기관의 연휴 등 집합투자업자 또는</u></p>	<p>②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(당일 포함)부터 제 8 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(삭제)</p> <p>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,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자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정한 환매청구 접수시간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에는, 동 환매청구에 기하여 당일에 자투자신탁이 이 투자신탁에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 환매청구일(당일 포함)로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9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(삭제)</p>

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 증권 모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		신탁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11 영업일까지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	
제25조 (수익증권의 환매연기)	기재 수정	<p>① 1.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</p> <p>가. (...)</p> <p>나.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·휴장 또는 거래정지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</p> <p>다. (...)</p> <p>라.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 결정의 일시적인 중지와 주식의 발행, 전환, 환매의 일시적인 중지가 되는 경우</p> <p>마.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로부터 환매대금을 현물로 지급받은 경우</p>	<p>① 1.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</p> <p>가. (...)</p> <p>나.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·휴장 또는 거래정지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(아래 예시 참조)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</p> <p>i)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 결정의 일시적인 중지와 주식의 발행, 전환, 환매의 일시적인 중지가 되는 경우</p> <p>ii)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로부터 환매대금을 현물로 지급받은 경우</p> <p>다. (...)</p>
부칙	신탁계약 변경 체결	-	(추가) 부 칙 (2018.04.00)

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 증권 모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			*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
바랍니다.

▶ 투자신탁명:

피델리티 이머징 마켓 재형 증권 자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

피델리티 차이나 컨슈머 재형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

▶ 주요변경내용:

- 환매대금 지급 주기 예외 규정 삭제
- 기재사항 수정 등

▶ 변경대비표:

피델리티 이머징 마켓 재형 증권 자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 피델리티 차이나 컨슈머 재형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제22조 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	환매대금 지급 주기 예외 규정 삭제	<p>②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(당일 포함)부터 제 8 영업일에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<u>다만, 해외 금융기관의 연휴 등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10 영업일까지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</u></p> <p>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, 수익자가 제 22 조의 2 에서 정한 환매청구 접수시간 경과 이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(당일 포함)로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9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<u>다만, 해외</u></p>	<p>②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(당일 포함)부터 제 8 영업일에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<u>(삭제)</u></p> <p>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, 수익자가 제 22 조의 2 에서 정한 환매청구 접수시간 경과 이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(당일 포함)로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9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<u>(삭제)</u></p>

피델리티 이머징 마켓 재형 증권 자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 피델리티 차이나 컨슈머 재형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		금융기관의 연휴 등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11 영업일까지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	
부칙	신탁계약 변경 체결	-	(추가) 부 칙 (2018.04.00) *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